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68호
2024. 4. 5.(금)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24-1105호 서울특별시의회 추가 제출안건 공고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105호

서울특별시의회 추가 제출안건 공고

지방자치법 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5일
서울특별시장

구분	연번	제출 안건명	실·본부·국
조례안 (2건)	1	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기획조정실 (조직담당관)
	2	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기획조정실 (조직담당관)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24년 월 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·확대 등 기능 조정

- 기획조정실로 ‘약자와의 동행’에 관한 사무 이관(←약자와의동행추진단)
 - ▶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→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(규칙기구)으로 이관
- 경제정책실 내 ‘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’ 기능강화
 - ▶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경제정책실→글로벌도시정책관(규칙기구)으로 이관
- 복지정책실 내 ‘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’ 사무 신설 및 ‘1인가구(←여성가족정책실)’ 관련 사무 이관
- 도시교통실 내 ‘교통단속 업무’를 ‘주차계획’ 업무와 통합 추진
- 문화본부 내 ‘국가유산 유지보수·전수·계승’ 업무와 ‘국가유산 복원·가치 제고’ 업무 역할 재정립 및 조문정비
- 시민건강국 내 산재되어 있는 난임, 어르신 건강관리, 중독예방, 대사증후군 등 ‘건강관리’ 기능 강화
-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을 ‘민생노동국’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 지원, 노동정책,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, 소비자 보호,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
- 디지털정책관을 ‘디지털도시국’으로 재편하여 디지털행정, 데이터기반 행정, 정보시스템 및 정보공개, 정보보안, 정보 인프라 구축, 공간정보 업무 추진
- 민생사법경찰단을 ‘민생사법경찰국’으로 재편하여 경제분야 및 안전분야 등 지명직무 단속 추진
- 재난안전관리실 내 ‘보행환경개선’ 관련 기능 강화
 - ▶ 건설혁신 관련 사무는 재난안전관리실→건설기술정책관(규칙기구)으로 이관
- 주택정책실 내 분산추진하고 있는 ‘임대주택’ 관련 기능 강화
 - ▶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주택정책실→건설기술정책관(규칙기구)으로 이관
- 감사위원회 내 ‘청렴 역량 증대 및 반부패 기능’ 강화
 - ▶ 인권 관련 사무는 감사위원회→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

- 나. 주요 실국(1급 기구)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및 기존 기구 명시화
- 도시교통실, 복지정책실, 주택정책실, 재난안전관리실에 각각 ‘교통운영관(3급)’, ‘돌봄·고독정책관(3급)’, ‘주택정책관(3급)’, ‘도로기획관(3급)’ 신설
 - 경제정책실의 ‘경제일자리기획관’, ‘창조산업기획관’, 도시교통실의 ‘교통기획관’, 주택정책실의 ‘건축기획관(←주택공급기획관)’ 기구 조례 명시화

다. 자율신설기구 일반기구화

-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인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(기구설치특례)가 폐지됨에 따라 ‘복지기획관’, ‘디자인정책관’, ‘경제일자리기획관’ 정비

※ 기구규칙 사항 : 디자인정책관

라. 한시기구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

- ‘주택공급기획관(3급)’을 폐지하고, 건축기획관(3급)으로 재편
- ‘균형발전기획관(3급)’을 일반기구화하고, (3.4급)으로 직급 변경
- ‘자원회수시설추진단(∼’ 24.8.18.)’과 ‘한강사업추진단(∼’ 24.7.16.)’의 존속기한을 각각 3년 연장(‘ 24.8.19.∼’ 27.8.18. / ‘ 24.7.17.∼’ 27.7.16.)

마. 시민이 알기 쉽고, 간결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 변경

- 경제정책실 (→ 경제실), 복지정책실 (→ 복지실), 도시교통실 (→ 교통실), 노동공정상생정책관 (→ 민생노동국), 재난안전관리실 (→ 재난안전실), 주택정책실 (→ 주택실), 푸른도시여가국 (→ 정원도시국)

※ 기구 규칙 사항 : 여성가족정책실 (→ 여성가족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, 제30조(정원의 규정), 별표2(시·도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)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국 협의 사항: 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‘ 24. 3. 29. ~ 4. 2.) 결과: 의견제출 있음

- (의견제출 1건) 입법예고 20일 준수 요청 및 세부 사업 관련 조직 신설 자제, 저출생·고령화·외국인 정책 관련 통합 조직 및 기후 정책 관련 조직 필요 의견(미반영)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**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의2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제정책실, 복지정책실, 도시교통실”을 “경제실, 복지실, 교통실”로, “시민건강국”을 “시민건강국, 민생노동국, 디지털도시국”으로, “재난안전관리실, 주택정책실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, 재난안전실, 주택실”로, “푸른도시여가국”을 “정원도시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, 창조산업기획관을,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, 돌봄·고독정책관을,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, 교통운영관을,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,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, 건축기획관을 둔다.

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 및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경제정책실)”을 “(경제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정책실장”을 “경제실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,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9호, 제5호 및 제8호로 한다.

4.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구성에 관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복지정책실)”을 “(복지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, 제4호,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, 제6호,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및 지역사회”를 “지역사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장애인복지정책 수립,”을 “장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장애인복지정책 수립, 장애인 거주시설·활동지원·인권·권익에 관한 사항

7. 사회적 고독·고립 문제 대응,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

9.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제8조의 제목 “(도시교통실)” 을 “(교통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운영·관리” 를 “운영·관리, 주차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호 중 “문화재 보존정책” 을 “국가유산 보존정책” 으로, “문화재 활용” 을 “국가유산 관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문화재 복원 및 관리” 를 “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” 으로 한다.

제12조의2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관리” 를 “관리, 공중위생의 관리” 로 한다.

2.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

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민생노동국)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4. 소비자보호·물가안정·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12조의4(디지털도시국)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,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
2. 빅데이터·통계의 수집·분석·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
3.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
4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5.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6.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

제14조의2의 제목 “(디자인정책관)” 을 “(민생사법경찰국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디자인정책관” 을 “민생사법경찰국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디자인진흥정책 수립·시행” 을 “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,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5조의 제목 “(재난안전관리실)” 을 “(재난안전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도로(차도) 관리, 도로 등 설해 대책,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,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
제16조의 제목 “(주택정책실)” 을 “(주택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택정책실장” 을 “주택실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를 제6호로 하고,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임대주택” 을 “공공주택” 으로 한다.

2.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, 매입·공급·관리에 관한 사항

제19조의 제목 “(푸른도시여가국)” 을 “(정원도시국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푸른도시여가국장” 을 “정원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.

제127조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3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서울특별시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를 삭제하고, 부칙 제3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중 “주택공급기획관, 균형발전기획관, 자원회수시설추진단” 을 “자원회수시설추진단” 으로 하고, “2024년 8월 18일” 을 “2027년 8월 18일” 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876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중 “제21조제4항” 을 “제21조” 로 하고, “2024년 7월 16일” 을 “2027년 7월 16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타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민생사법경찰단” 을 “민생사법경찰국” 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“경제정책실” 을 “경제실” 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” 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4호나목 중 “푸른도시여가국” 을 “정원도시국” 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6호가목 중 “복지정책실”을 “복지실”로 한다.
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“재난안전관리실”을 “재난안전실”로 한다.
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“주택정책실”을 “주택실”로 한다.
 제33조제1항제8호다목 중 “디지털정책관”을 “디지털도시국”으로 한다.
 제3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“도시교통실”을 “교통실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6조제1호가목 중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을 “재난안전실장”으로 한다.
 제8조제3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 및 복지정책실장”을 “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9조제3항 중 “주택정책실장, 복지정책실장”을 “주택실장, 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31조제3항 중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3조제3항 중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4조제3항제5호 중 “복지정책실장,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을 “복지실장, 민생노동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12조제5항 중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주택정책실장”을 “주택실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3조제2항 중 “경제정책실장”을 “경제실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7조제1호나목 중 “경제정책실장”을 “경제실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경제정책실장” 을 “경제실장” 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경제정책실장” 을 “경제실장” 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장” 으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장” 으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장” 으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장” 으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장” 으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디지털정책관” 을 “디지털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⑲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디지털정책관” 을 “디지털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⑳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디지털정책관” 을 각각 “디지털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디지털정책관” 을 “디지털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디지털정책관” 을 “디지털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㉑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디지털정책관” 을 “디지털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㉒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주택정책실” 을 “주택실” 로 한다.

㉓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의2제3항 중 “주택정책실장” 을 “주택실장” 으로 한다.

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주택정책실장” 을 “주택실장” 으로 한다.

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, 도시교통실장,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, 교통실장,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푸른도시여가국장” 을 “정원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별표 1의 관리자란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하고,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하며, 같은 별표의 비교 나목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㉖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푸른도시여가국장” 을 “정원도시국장” 으로 한다.

㉗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4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제12조제3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제14조제2항제4호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제31조제1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” 을 “재난안전실” 로 한다.

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” 을 “재난안전실” 로 한다.

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㉚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㉛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8호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㉓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 관리청란 중 “안전총괄실장” 을 “재난안전실장” 으로 한다.

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
㉖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제13조제2항제2호 중 “도시교통실” 을 “교통실” 로 한다.

㉗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2 중 “도시교통실” 을 “교통실” 로 한다.
제3조제2항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“도시교통실” 을 “교통실” 로 한다.

㉘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
㉙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 서식 중 “도로교통사업소장”
을 각각 “도로사업소장” 으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 중 “도로 관리사업소장” 을 “도로사업소장” 으로 한다.

㉚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“경제정책실” 을 “경제실” 로 하고, “복지정책실” 을 “복지실” 로 하며, “도시교
통실” 을 “교통실” 로 하고,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 을 “민생노동국” 으로 하며, “재난
안전관리실” 을 “재난안전실” 로 하고, “주택정책실” 을 “주택실” 로 하며, “푸른도시여가
국” 을 “정원도시국” 으로 한다.

㉛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3항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
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도시교통실장” 을 “교통실장” 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제9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의2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·본부·국(이하 “자율신설기구”라 한다)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② 제1항에 따른 평가(이하 이 조에서는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는 성과지표 달성도, 행정수요 지속성,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.	
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	

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,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·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(생략)

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, 복지정책실, 도시교통실, 기후환경본부, 문화본부, 관광체육국, 평생교육국, 시민건강국, 행정국, 재무국, 재난안전관리실, 주택정책실, 도시공간본부, 균형발전본부, 푸른도시여가국, 물순환안전국을 둔다.

③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,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, 디자인정책관을 둔다.

제5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은

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경제실, 복지실, 교통실-----

-- 시민건강국, 민생노동국, 디지털도시국-----
민생사법경찰국, 재난안전실, 주택실----- 정원도시국-----.

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, 창조산업기획관을,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, 돌봄·고독정책관을,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, 교통운영관을,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,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, 건축기획관을 둔다.

제5조(기획조정실) -----
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3. ~ 7. (생 략)

8.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

9. (생 략)

10. (생 략)

제6조(경제정책실) 경제정책실장은
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 략)

5. (생 략)

6. 국제교류 · 협력, 국제기구 · 회

의에 관한 사항

7. 캠퍼스타운 조성 · 활성화에

관한 사항

8. (생 략)

9. (생 략)

10. (생 략)

제7조(복지정책실) 복지정책실장은
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
한 사항

4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
지와 같음)

<삭 제>

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9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제6조(경제실) 경제실장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
운 조성에 관한 사항

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5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8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제7조(복지실) 복지실장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장애인복지정책 수립, 장애인

3. <u>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</u>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<u>장애인복지정책 수립, 재활시설·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</u> 6. (생략) <u><신설></u> 제8조(도시교통실) 도시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5. (생략) 6. 주차계획의 수립·조정, 주차장 건설 및 <u>운영·관리</u>에 관한 사항 7. ~ 9. (생략) 10. <u>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</u> 제10조(문화본부)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·2. (생략)	<u>거주시설·활동지원·인권·권익에 관한 사항</u> 8. <u>지역사회</u> ----- -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 7. <u>사회적 고독·고립 문제 대응,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</u> 4. <u>장애인</u> ----- 5. (현행 제6호와 같음) 9. <u>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u> 제8조(교통실) <u>교통실장</u>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운영·관리,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</u>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제10조(문화본부)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---	--

3.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
 4.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5. · 6. (생략)
 제12조의2(시민건강국)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1. (생략)
<신설>
 2. · 3. (생략)
 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5. (생략)
 6.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
 7. (생략)
<신설>

3. 국가유산 보존정책 --- 국가유산 관리-----
 4.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-----
 -
 5. · 6. (현행과 같음)
 제12조의2(시민건강국) -----
 -----,
 1. (현행과 같음)
 2.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
 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 5. ----- 관리, 공중위생의 관리-----
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삭제>
 7. (현행과 같음)
 제12조의3(민생노동국)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1.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2.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 4. 소비자보호·물가안정·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

<신 설>

제14조의2(디자인정책관)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디자인진흥정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,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

제15조(재난안전관리실) 재난안전

항

5.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12조의4(디지털도시국)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,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
2. 빅데이터·통계의 수집·분석·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
3.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
4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5.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6.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

제14조의2(민생사법경찰국) 민생사법경찰국장-----.

1.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-----
2.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,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제15조(재난안전실) 재난안전실장-

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

<신설>

6. (생략)

7.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, 도로 등 설해 대책, 지하안전관리,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8. · 9. (생략)

제16조(주택정책실)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3. (생략)

4. (생략)

5. 공공택지개발,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

6. ~ 8. (생략)

9.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도로(차도) 관리, 도로 등 설해 대책,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7.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,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
8. · 9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주택실) 주택실장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, 매입 · 공급 · 관리에 관한 사항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8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4. ----- 공공주택 -----

9. ~ 11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
5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10.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
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11. (생 략)

제19조(푸른도시여가국) 푸른도시
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
다.

1. ~ 9. (생 략)

제21조(한시기구) ① 주택공급정책
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
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
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
며,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
을 분장한다.

1.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
사항

2.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
조정에 관한 사항

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
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
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
며,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
을 분장한다.

1.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
생정책의 수립·조정·시행에
관한 사항

2.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
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6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제19조(정원도시국) 정원도시국장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한시기구) <삭 제>

<삭 제>

3. 동남권, 동북권, 서부권 등 권
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

③ · ④ (생 략)

제127조(소관사무) 감사위원장은
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9. (생 략)

10.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
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
제130조(소관사무) 시민감사옴부즈
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
다.

1. ~ 8. (생 략)

<신 설>

부 칙 <제8448호, 2022.8.8.>

제2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
제4조제3항의 경제일자리기획
관, 복지기획관, 디자인정책관
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
일까지로 한다.

부 칙 <제8448호, 2022.8.8.>

제3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

조의 주택공급기획관, 균형발
전기획관, 자원회수시설추진단
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
일까지로 한다.

① · ②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같음)

제127조(소관사무) ----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30조(소관사무) -----

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
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
부 칙 <제8448호, 2022.8.8.>

<삭 제>

부 칙 <제8448호, 2022.8.8.>

제3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

----- 자원회수시설추진단-

----- 2027년 8월 18일

-----.

부 칙 <제8766호, 2023.7.17.>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
조제4항의 한강사업추진단의
존속기한은 2024년 7월 16일까
지로 한다.

부 칙 <제8766호, 2023.7.17.>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
조의 -----
----- 2027년 7월 16일
-----.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발의 ·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**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 · 위원회 ·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·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,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24년 월 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신설기구·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

- 3급 +7명, 3·4급 △2명, 4급 +10명, 4·5급 △6명
 - ▶ (본 청) 3급 +7명, 3·4급 △3명, 4급 +10명, 4·5급 △7명
 - ▶ (사업소) 4급 +1명
 - ▶ (합의제) 3·4급 +1명, 4급 △1명, 4·5급 +1명

나.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

- 5급이하 정원 및 전문경력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장기결원 감원 및 직군 조정(5급이하△12, 전문경력관+3)
 - ▶ 서울대공원 동식물관리요원(임기제) 퇴직 대비 인력충원을 위한 전문경력관 다군 조정 사항 포함 (5급이하 △4 → 전문경력관 +4)
 - ▶ 물재생센터 위험물취급요원(전문경력관) 장기결원 정원 조정 사항 포함 (전문경력관 △1 → 5급이하+1)

다. 조직·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

- 본청 △1 → 합의제 +1
 - ▶ 합의제 감사위원회 ‘청렴담당관’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(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, 제30조(정원의 규정), 별표2(시·도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)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첨부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 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 24. 3. 29. ~ 4. 2.) 결과: 의견제출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10,521명” 을 “10,520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226명” 을 “227명” 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

(제4조제1항 관련)
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총 계	11,730					
정무직 계	4					
시 장	1	1				
부시장	1	1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
일반직 계	10,700					
1급	7	6	1			
2·3급	26	21		1	3	1
3급	25	15		1	9	
3·4급	3	2				1
4급	269	164	19	8	71	7
4·5급	2	1				1
5급 이하 소계	10,208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0					
별정직 계	37					
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연구직 계	410					
연구관	73	8		41	24	
연구사	337					
지도직 계	25	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2					
교육공무원 계	554					
총 장	1			1		
교수 등	476			476		
조 교	77					

※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, 5급 이하 소계는 10,207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정원 19,167명을 유지하되, 직급 조정 및 직군 조정 관련 인건비 및 기구운영비 발생
- 비용추계의 전제 :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및 기구운영비 추계
-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지출						
	○ 인력운영경비	170,725	349,986	358,735	367,704	376,896	1,624,046
	○ 기구운영경비	54,550	109,100	109,100	109,100	109,100	490,950
	소계(a)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수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
※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2.5%('24년 기준) 적용 추계

※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를 고려하여, 6개월을 기준으로 함 [정원배정 : 2024.7월(예정)]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국비						
	시비						
	지방세수입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총정원 변동없음

○ 일반직 : (-)

- 3급 +7, 3.4급 △2, 4급 +10, 4.5급 △6, 6급 △8, 9급 △4

- 전문경력관 나군 △1, 전문경력관 다군 +4

2. 비용소요 추계 : +450,550천원

○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차년도 12개월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
합 계	+450,550	◆ 총 계 : +450,550 [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] : 341,450 ▷ 3급(+7) : $118,172 \times 7\text{명} = 827,205$ ▷ 3.4급(△2) : $118,172 \times \Delta 2\text{명} = -236,344$ ▷ 4급(+10) : $100,252 \times 10\text{명} = 1,002,521$ ▷ 4.5급(△6) : $100,252 \times \Delta 6\text{명} = -601,512$ ▷ 6급(△8) : $75,817 \times \Delta 8\text{명} = -606,535$ ▷ 9급(△4) : $44,200 \times \Delta 4\text{명} = -176,799$ ▷ 전문경력관 나군(△1) : $71,598 \times \Delta 1\text{명} = -71,598$ ▷ 전문경력관 다군(+4) : $51,128 \times 4\text{명} = 204,513$ ※ 인력운영비 : 기본급, 수당, 연금부담금, 건강보험금 등 포함 [기구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] : 109,100 ▷ 3급(+7) : $14,700 \times 7\text{명} = 102,900$ ▷ 3.4급(△2) : $12,500 \times \Delta 2\text{명} = -25,000$ ▷ 4급(+10) : $4,200 \times 10\text{명} = 42,000$ ▷ 4.5급(△6) : $1,800 \times \Delta 6\text{명} = -10,800$ ※ 기구운영비 : 업무추진비, 직책급 포함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